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편 등 -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기존)’을 ‘인천공항세관(개편)’과 ‘인천세관(개편)’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기존)’을 ‘인천공항세관(개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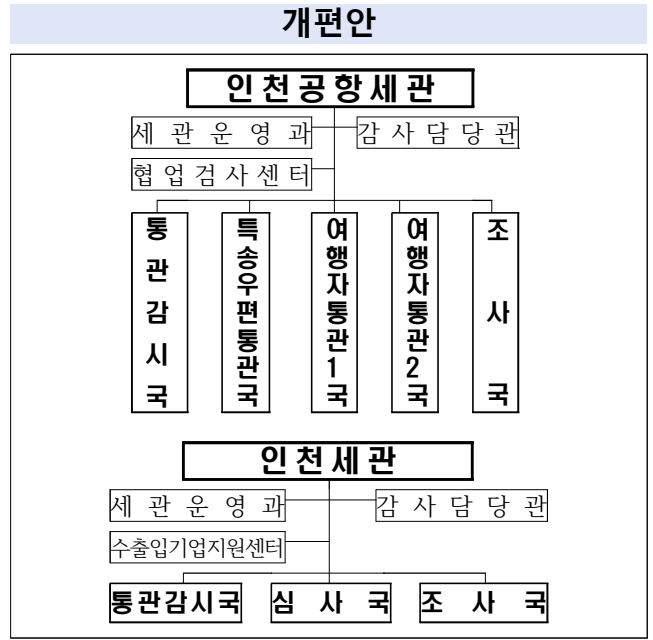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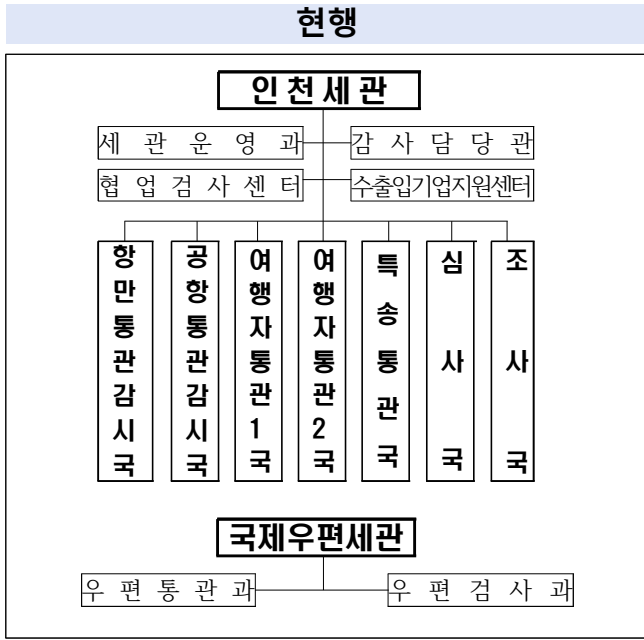
I. 개정 이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1.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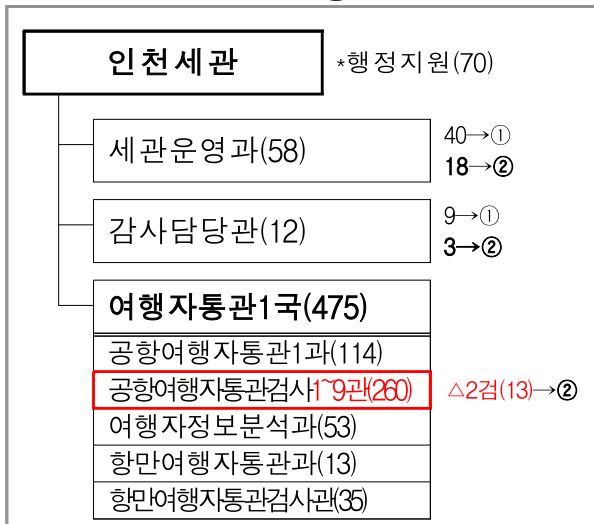
-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공항과 항만의 이질적 업무특성*, 업무량·시설 증대**를 고려하여 現 세관을 분리
 - * (인천공항) 마약수사·항공물류·전자상거래, (인천항) 對중국·해상물류·혁신산업 지원
 - ** 수입건수 약 3.3배 증가(15년, 23백만건 → 22년, 76백만건), 업무시설 확대(5개 → 9개 → 12개)
-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및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국제세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통합하여 ‘특송우편통관국’으로 확대·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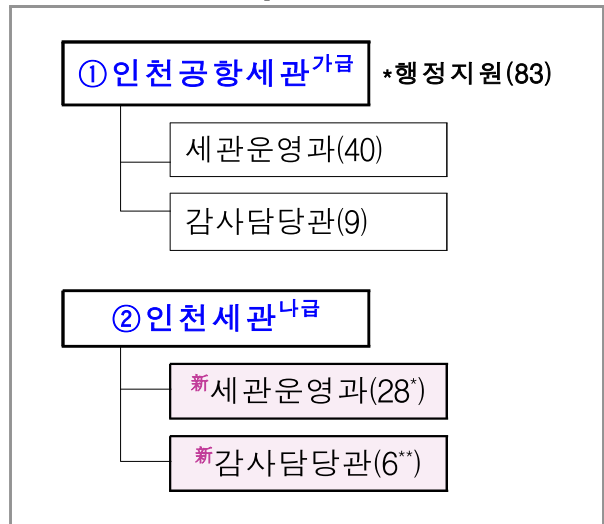
2. 인천세관 행정지원 부서(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 여행자통관검사관 2개 감축 → 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 행정지원부서 신설 전후 조직도 >

< 현행 >



< 개편 > (순증 無)



3.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 조정

사무분장	현행	조정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협업검사	협업검사센터	협업검사센터	수출입물류과
기업지원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수출입물류과 (기업지원,인증수출자) 통관검사과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조사정보	조사정보과	조사총괄과	조사정보과
기업심사· 쟁송	심사총괄과	심사정보과	심사총괄과
원산지검증	FTA검증과	심사정보과	FTA검증과

4. 인천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 국장별 보임가능 계급(3·4급 또는 4급) 조정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삭제,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2개)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 3·4급) 직급하향, 부산세관 감시국장(3·4급 → 4급) 직급하향, 인천세관 조사국장(4급) 신설

구분	직위수	고위	3·4급		4급
			계	15	
현행	계	17	1	15	1
	인천 세관	7	항만통관 감시국장	공항통관감시국장, 여행자통관1국장, 여행자통 관2국장, 특송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서울 세관	5		심사1국장, 심사2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통관 국장
	부산 세관	5		통관국장, 감시국장, 신항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세관	직위수	3·4급		4급
		계	15	
조정	계	18	15	3(+2)
	인천 공항	5	통관감시국장, 여행자통관1국장, 여행자통관2국장, 특 송우편통관국장, 조사국장	
	서울	5	심사1국장, 심사2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통관국장
	부산	5	통관국장, 신항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감시국장
	인천	3	통관감시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T 051-462-8278
E ghnoh@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